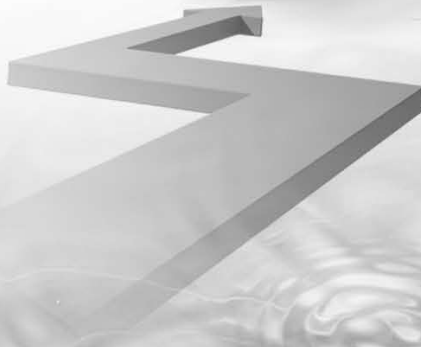


청렴<sup>韓</sup>세상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 일선·청탁 근절방안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 알선 · 청탁 근절 방안



# CONTENTS

<b>I.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b> .....	<b>5</b>
1.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	6
2. 청렴수준에 대한 국내적 평가 .....	8
<b>II. 알선·청탁 근절 정책의 추진배경</b> .....	<b>13</b>
1. 부패발생의 원인 - 알선·청탁 .....	14
2. 알선·청탁 근절 추진배경 .....	16
<b>III. 알선·청탁 근절 방안</b> .....	<b>21</b>
1. 반부패·청렴정책방향 .....	22
2. 2011년도 중점 추진 정책 .....	22
3. 알선·청탁 유형 및 대처방안 .....	26
<b>IV. 향후계획</b> .....	<b>37</b>
1.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	38
2. 향후계획 .....	38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기준 .....	39
•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평가지표 .....	41
• 알선·청탁 사례 .....	43
• 알선·청탁 금지에 관한 법령 .....	49
• 고위 공직자 청렴서약 의무화 추진 방안 .....	51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지침 .....	55
•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	58
• 공무원 행동강령 .....	70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 알선 · 청탁 근절 방안



I

**우리나라 부패의  
현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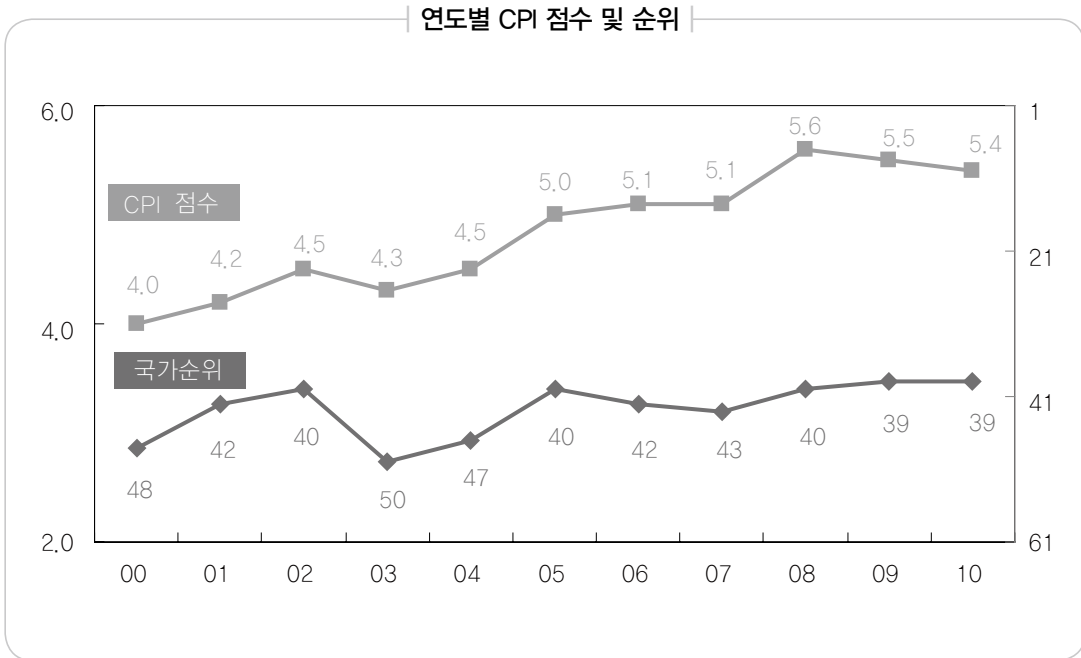
# I

## 우리나라 부패의 현 주소

### 1.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 ▣ 국가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국가청렴도(CPI)는 OECD 30개국 중 22위, 아시아 경쟁국 중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다음으로 5위 수준에 불과



- 새정부 출범 이후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각기 다름

〈개선〉 PERC 아시아 국가 부패지수 : 4.97점('09) → 4.88점('10) / 낮을수록 청렴  
IMD 국가경쟁력 지수(부패항목) : 3.41점('09) → 3.67점('10) / 높을수록 청렴

〈하락〉 WEF 국가경쟁력지수(공공자금 유용) : 46위/133국('09) → 56위/139국('10)  
WB 거버넌스 지수(부패통제지수) : 0.46점('08) → 0.45점('09)



## ▣ 한국 국가경쟁력과 청렴도

- 국가강국지수(National Greatness Index)
  - 매일경제신문과 베인&컴퍼니가 공동 주관한 평가('09년)에서 종합점수 4.0점(10점 만점), 조사대상 41개국 중 28위 기록
  - 선진국과 비교 시 부정부패 등 「사회적 자본지수」가 특히 취약한 실정

###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사회적 자본 비교

	노사관계	법질서	기업윤리	국가신뢰도	부정부패	시민참여	종합지수
선진국	5.9	8.0	7.2	9.1	7.7	8.0	7.7
한국	4.4	3.3	4.9	5.0	2.9	2.2	3.8

※ 비교대상 선진국은 G7 및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 국가

### ▣ 대한민국의 국가강국 지수

한국 강국지수 선진국의 절반 수준 ○ G7과 4만달러 국가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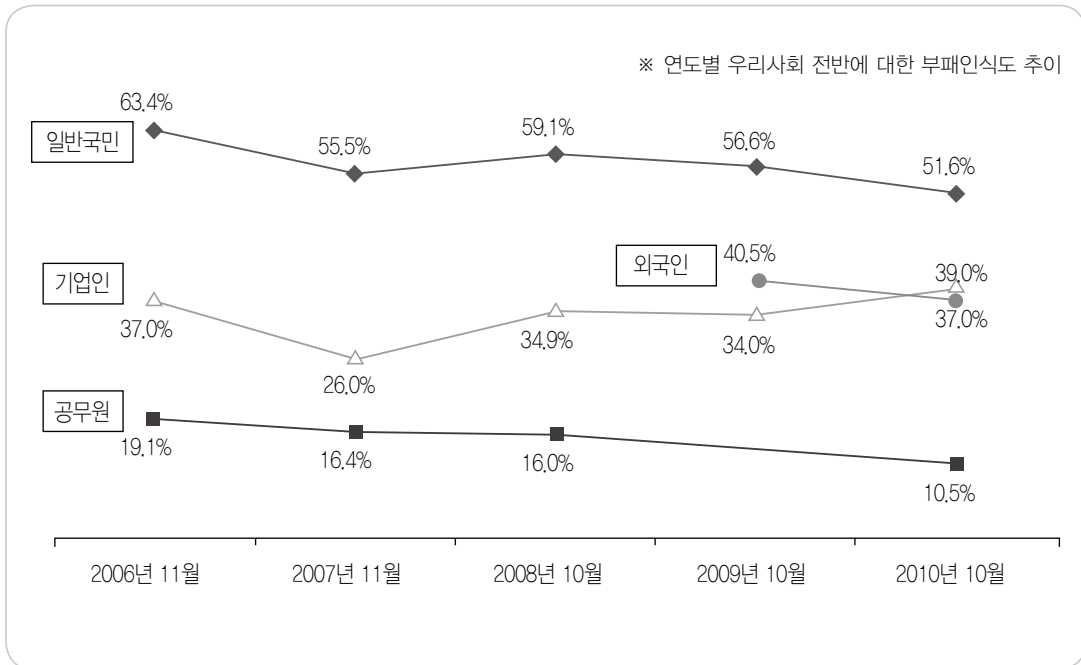
## 2. 청렴수준에 대한 국내적 평가

### ▣ 국내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위원회는 매년 일반국민 · 공무원 ·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부패발생 원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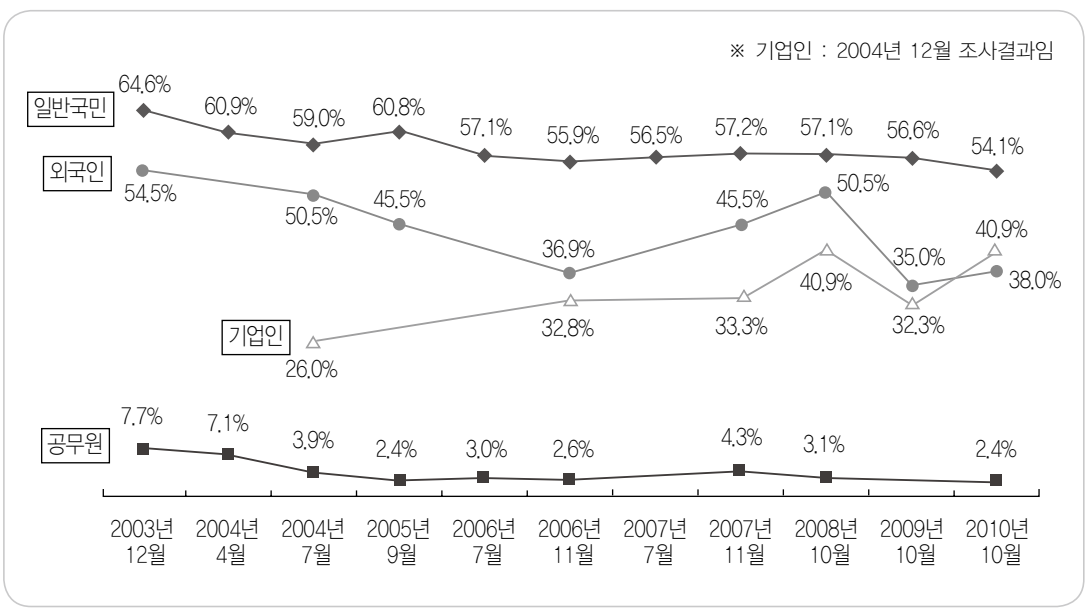
###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수준】

- '10년에는 일반국민의 51.61%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전년(56.6%) 대비 다소 개선(4.99%p ↑)되었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1/2 이상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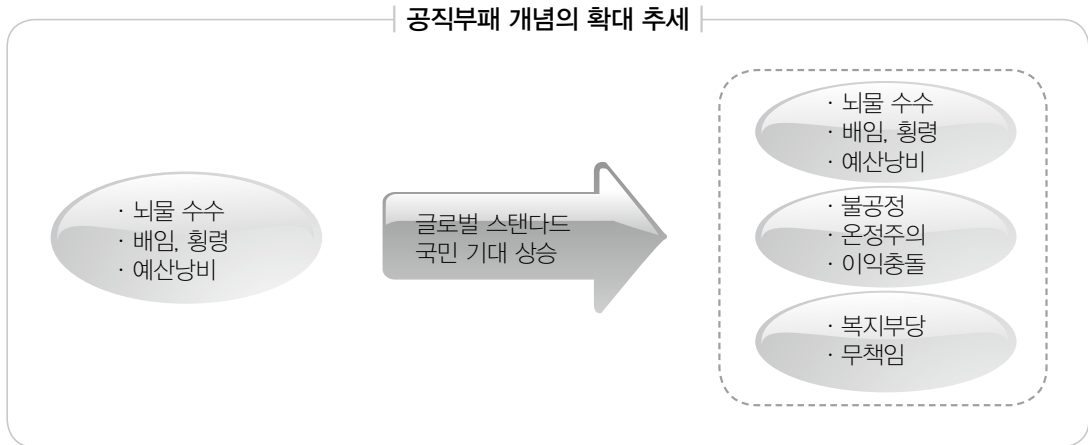
·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54.1%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들은 2.4%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두 주체 간에 큰 폭의 인식차가 존재



· 이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수준과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 정도 등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

**【 부패 형태의 고도화·지능화 추세 】**

- 당장의 금전적 대가가 아닌 퇴직 후 취업 보장, 자녀 취업청탁 등 간접적·비경제적 형태의 부패
- 직접 당사자간에 거래하지 않고 외국유학자녀 학비보조 등 쉽게 노출이 되지 않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달
- 금품수수의 경우에도 차용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문제발생시 처벌모면 시도
- 평소에 보험을 드는 성격으로 권력기관 공직자에 범인카드 공여, 금품·향응 접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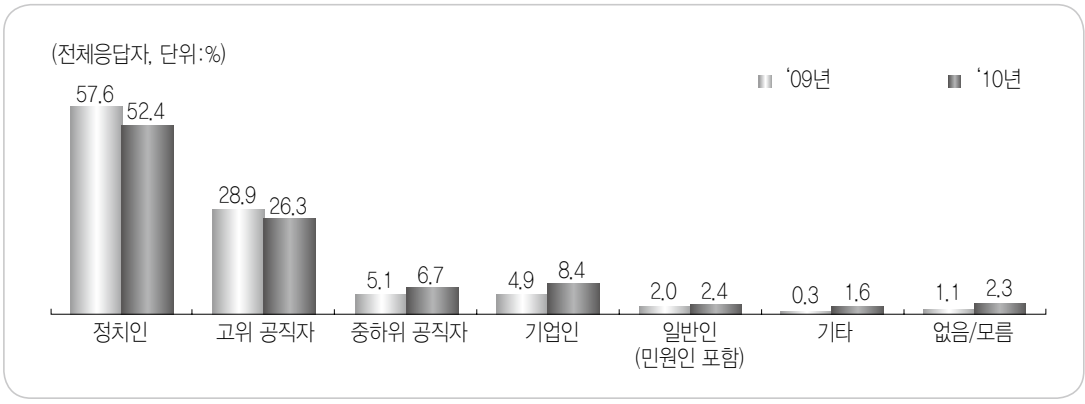
**【 부패 유발주체 】**

- 우리사회의 부패 유발주체에 대해 정치인(57.6%), 고위공직자(28.9%), 중하위 공직자(5.1%)순으로 응답
- 전년 대비 부패 유발주체로 고위공직자의 비율이 다소 감소( '09년 28.9% → '10년 26.3%)으나 여전히 정치인 다음의 비중을 차지

| **부패 유발주체** |

(조사대상: 일반국민, 단위: %)

구 분	'09년	'10년	전년대비
정치인	57.6	52.4	△4.8%p
고위 공직자	28.9	26.3	△2.4%p
중하위 공직자	5.1	6.7	1.6%p
기업인	4.9	8.4	3.5%p
일반인 (민원인 포함)	2.0	2.4	0.4%p
기타	0.3	1.6	1.3%p
없음/ 모름	1.1	2.3	1.2%p



- '10년 내부청렴도 측정결과, 중·하위직 공직자들이 경험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6.0%로 전년보다 2.8%증가
  - 중앙행정기관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도 지속적으로 증가 ( '08 1.5% → '09 3.0% → '10 3.8%)
  - '10년도 '기관장 노력도'는 8.08점으로 전년에 비하여 0.23점 하락
    - ※ 기관장 노력도는 '06년부터 내부청렴도 부가항목으로 조사하였으며, 기관장 노력도와 기관의 내부청렴도는 높은 상관관계로 기관장의 청렴의지가 기관의 청렴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기관유형별 기관장 노력도와 내부청렴도

기관유형	기관장노력도			내부청렴도		
	'09	'10	Gap	'09	'10	Gap
전 체	8.31	8.08	- 0.23	8.14	7.96	- 0.18
중 앙 행 정 기 관	8.50	8.66	0.16	8.21	8.35	0.14
광 역 자 치 단 체	8.62	8.78	0.16	8.20	8.31	0.11
기 초 자 치 단 체 *	7.87	7.99	0.12	7.90	7.78	- 0.12
시 도 교 육 청	8.51	7.74	- 0.77	8.21	7.73	- 0.48
지 역 교 육 청	-	7.90	-	-	7.88	-
공 직 유 관 단 체	8.97	8.19	- 0.78	8.66	8.13	- 0.53
- 기존 측정 기관	8.97	8.90	- 0.07	8.66	8.68	0.02
- 신규 측정 기관	-	7.90	-	-	7.90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 알선 · 청탁 근절 방안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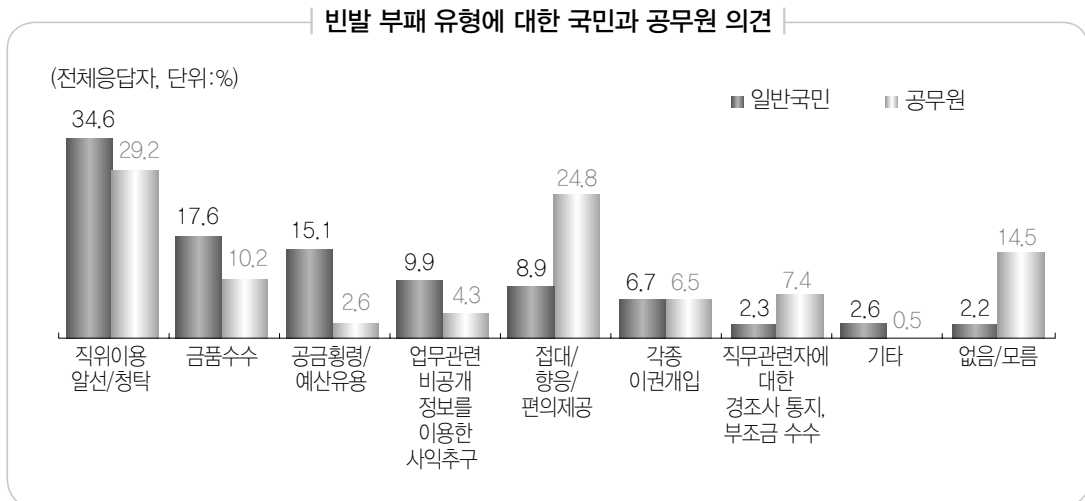
## 알선·청탁 근절 정책의 추진배경

## II 알선·청탁 근절 정책의 추진배경

### 1. 부패발생의 원인 - 알선·청탁

#### ▣ 빈발 부패유형

- 위원회가 '10년도 10월 일반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빈발 부패유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형태로 국민들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 '금품수수', '공금 횡령 및 예산유용' 등을 지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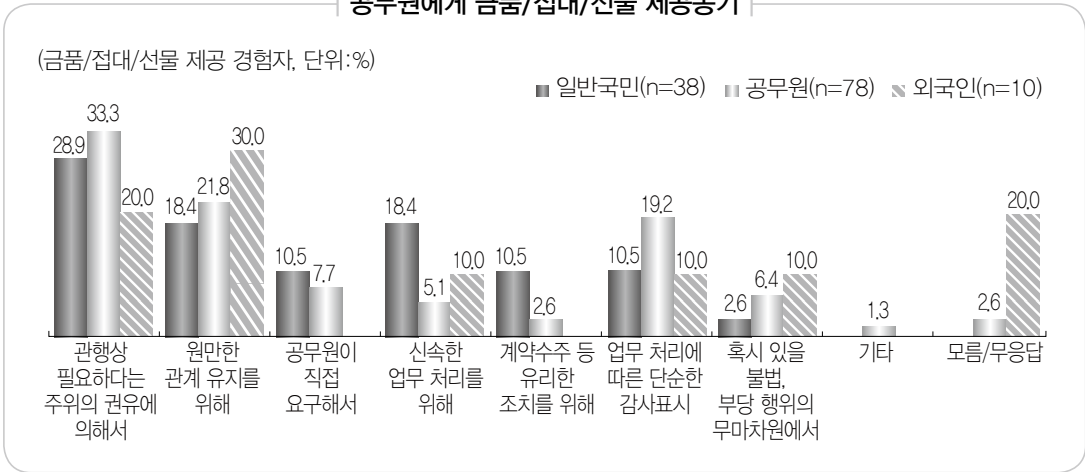


#### ▣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동기

-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제공동기로는 일반국민(28.9%)과 기업인(33.3%)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에 의해서'로 가장 많은 반면, 외국인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30.0%)가 가장 많았음
- 전년대비, 일반국민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6.3%→18.4%, +12.1%p), 기업인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 (21.4%→33.3%, +11.9%p)가 가장 많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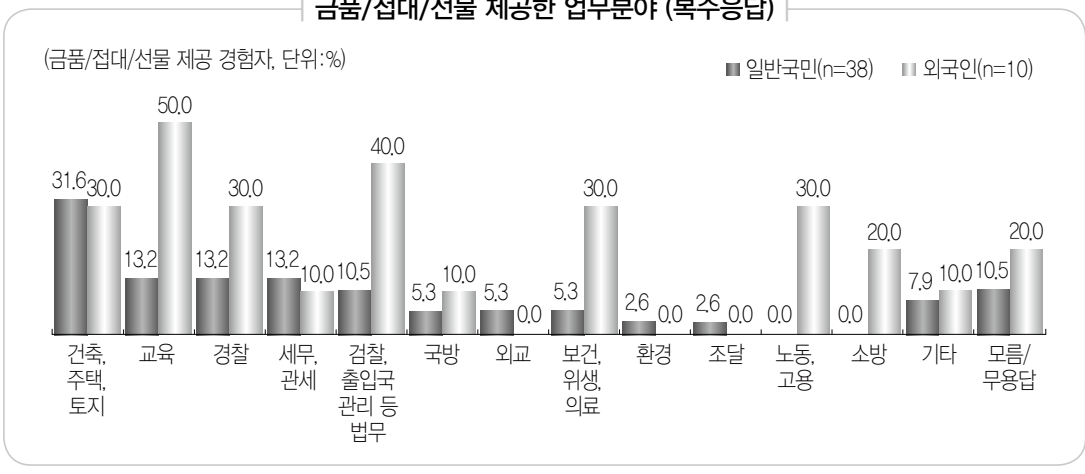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제공동기**



**금품 등을 제공한 업무분야(일반국민, 외국인)**

- 일반국민의 경우 금품/접대/선물을 제공한 업무분야로는 ‘건축/주택/토지’ 분야가 31.6%로 가장 높았음
- 외국인의 경우 교육(50.0%), 검찰, 출입국 관리 등 법무(40.0%)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았음

**금품/접대/선물 제공한 업무분야 (복수응답)**



## 2. 알선·청탁 근절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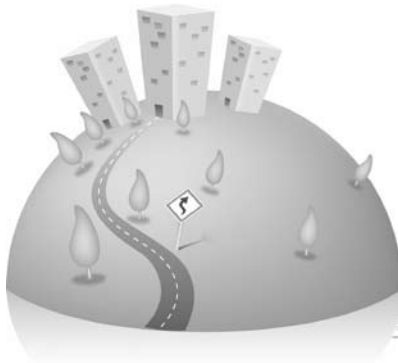
- 대통령께서는 장관워크숍 등 각종회의시 마다 부패근절이 선진사회로 가는 길임을 강조
  - 특히 '10.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공정한 사회' 실현에 국정과제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말씀을 하심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취임시 '고위공직자'의 부패전염성을 언급하고, '전방위적 알선·청탁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11.2.8.)
-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0.10.월 조사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형태로 국민들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 34.8%로 1위를 차지한바 있음
  - 공직자에 대한 '알선·청탁근절'이 우리사회의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

### 가. 대통령 말씀

- 대내적으로 '공정한 사회' 실현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대두

####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10.8.15)

-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
-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1) 고위공직자의 솔선 수범에 관한 말씀

- 공직사회 기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전같이 아래부터 교육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기 보다는 윗 선에서 솔선해서 깨끗해져야 함(장관내정자 워크숍, '08.2.16.)
- 정부의 투명성, 윤리경영 등의 분야에서 한국은 현재 OECD 최저 수준임. 정부부터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만들어야함.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사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08. 8. 15.)

### (2) 공직자 비리의 신상필벌에 관한 말씀

- 공직부패 처벌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법무부 업무보고, '08. 3. 19.)
-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더 엄격하게 다루겠음. 곳곳에 쌓인 먼지와 때를 씻어내어 사회 각 부분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임. (미·일 순방관련 기자회견, '08. 4. 13.)

### (3)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부정 비리 척결에 관한 말씀

- 선진일류국가의 요건은 경제성장, 법치주의와 도덕·윤리의 가치제고임.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권력형 비리척결은 국민들의 법치주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줌 (권익위 연두업무보고 '08.12)
-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는 작업 진행되고 있음. 선진화는 절대로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으며, 사회 모든 부문의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잘 사는 나라를 넘어서 깨끗한 사회, 바른 나라를 만들어 가야함. (4.19 혁명 제49주년 기념, '09. 4. 19.)

## 나. 국민권익위원장 청렴정책 추진강조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취임사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전염성을 언급하며 부패방지의 필요성 강조

### 김영란 위원장 취임사('11.1)

- 부패의 폐해는 국가의 존망을 흔들어 놓음
- 한 사람이 부패하면 옆사람에게도 전염되며 특히 그 사람이 높은 사람, 가진 사람일 수록 그 전염성은 더 커짐

- 위원회는 '전방위적 알선·청탁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시 보고('11.1월)

-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 청렴서약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무 회의시 보고('11.2.8)

### 위원장 임명시 대통령 말씀('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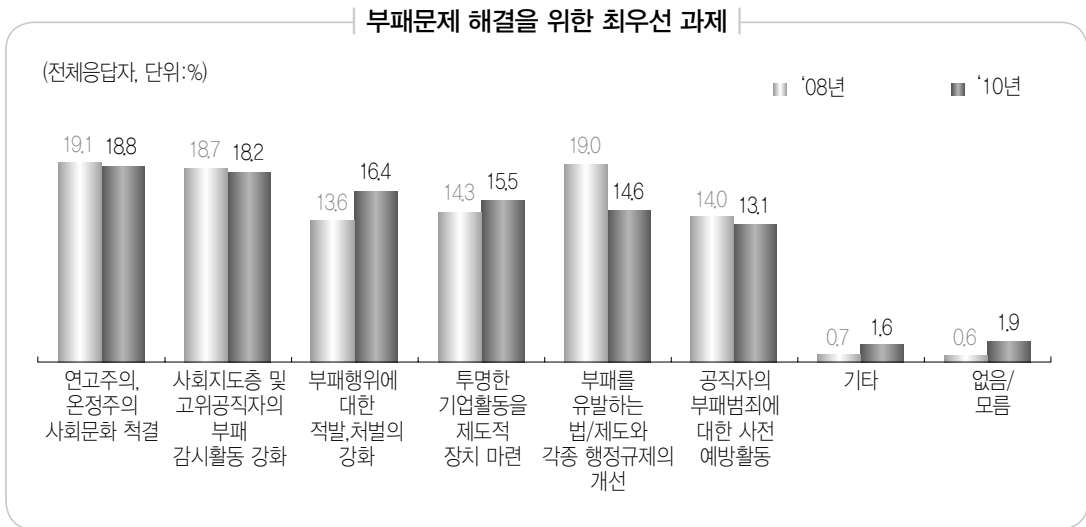
- 밑에서부터 비리를 없애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위에서 깨끗해져 내려가는 것은 빠를 것임.
- 장관들이 솔선하면 부처 국장들도 달라지고 또 그 다음으로 연결될 것임

## 다. 우리 현실에 대한 전문가 견해

- 한국사회의 부패현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합리적인 제도와 편법추구의 문화적 후진성을 지적
  - 결과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성공주의, 결과주의의 문제점 지적
  - 그 동안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했으나, 어떻게 잘 사는지에 대한 고민은 결여되어 있었음 (이시형, 정신과 전문의)
  -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에 들어야 성공할 수 있는 비합리적이고 후진적인 룰(rule) 때문에 뇌물 스캔들이 반복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뇌물상납 등 편법 추구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 여겨짐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라.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 공무원은 부패문제 해결위한 최우선 과제로 ‘연고주의, 온정주의 사회문화 척결’ (18.8%)와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 감시활동 강화’ (18.2%) 순으로 응답
-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각종행정규제의 개선’을 선택한 비율은 전년보다 4.4%p감소



###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항 목	'08년	'10년	전년대비
연고주의, 온정주의 사회문화척결	19.1	18.8	△0.3%p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 감시활동 강화	18.7	18.2	△0.5%p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	13.6	16.4	+2.8%p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14.3	15.5	+1.2%p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	19.0	14.6	△4.4%p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14.0	13.1	△0.9%p
기타	0.7	1.6	+0.9%p
없음/ 모름	0.6	1.9	+1.3%p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 알선 · 청탁 근절 방안



# III

## 알선·청탁 근절 방안

# III | 알선 · 청탁 근절 방안

## 1.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청렴정책방향

### ▣ 기본방향

- 위원회의 부패방지 정책은 크게 사전예방 측면과 사후통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음  
·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적발·처벌 뿐 아니라, 부패 유발제도의 개선 및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 부패의 사전예방 정책으로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여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운영 등
- 또한,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와 처리,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및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사후통제 장치로 운영

## 2. 2011년도 중점 추진 정책

사회지도층의 불공정 행태 개선 및 가장 빈번한 부패유형인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 대책을 집중 추진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 (1) 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불공정 사례 개선

- 공직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사례 점검·개선
  - 공공사업 정보 유출 등 직무관련 정보 거래,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 등 중점 점검
  - 학력, 질병 등 병역면제 요건을 악용한 병역의무회피 방지 방안 마련
    - ※ 최근 3년간 학력사유 군 면제자 2,969명 중 1,673명은 면제 후 검정고시 합격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제도의 개선
  - 비자금 조성, 전형료 부당사용 등 회계처리상 불공정 행태 개선
    - ※ 대입전형료는 연 4천억원으로 일부대학은 직원해외연수 등에 사용하다 적발
  - 리베이트에 대한 기업·법인 처벌법규 실효성 강화 및 금융분야 부패통제시스템 정비
-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불공정 사례 점검, 개선
  - 공공부문의 직원 채용과정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 집중 점검
    - ※ 경기도 모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직원의 25%가 시관계자 친인척 등으로 구성
  - 입학사정관계 개선 등 서민자녀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입학 관련 불공정 요인 정비

## (2) 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 각급기관의 자율적 알선·청탁 근절 노력 촉진
  -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행위규범 마련, 보급
  - 기관별 알선·청탁 수준, 빈도 등의 평가요소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확대 반영
  -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한 알선·청탁 근절 노력도 평가 병행
    - ※ ‘인사청탁자 공개 및 인사상 불이익 부여’ 등 각종 제도 실시여부 평가
- 제·개정 법령평가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알선·청탁 소지 차단
  - 관련 법령 전반에 이익충돌 방지장치를 신설·보완
    - ※ 준사법 기관 의결의 투명성 강화, 사회이사 자격기준의 실효성 확보 등
-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생활 속 알선·청탁 근절
  - IT 기술 등을 통해 알선·청탁을 이용한 ‘새치기’ 관행 개선
    - ※ 병원 및 보육·문화시설 등에 예약변경내역 등록시스템 도입, 휴양시설·열차표 등의 부당한 사전 확보 금지 등

- 알선·청탁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대책 추진
  - ‘알선·청탁은 부패’라는 인식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배포
  - ‘알선·청탁은 안하기’를 테마로 한 민·관 합동 반부패·청렴 캠페인 추진
    - ※ 페어플레이(Fair Play) 결의대회, 알선·청탁 안하기 서약 등

### (3)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 대책 추진

- 고위공직자의 청렴·윤리의식 제고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 모형을 개발, 각급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급
  -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고위공무원단 사전역량 과정 등 각종 교육 훈련에 청렴교육 필수 반영 추진
- 공직자의 솔선수범 유도를 위한 행동강령 강화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11.2월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보급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지자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지방의회의원의 이해관계 사안 연계, 이권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
- (제12조) 의원 간 금품수수 행위 금지
  - 의회 내 선거 시 매표를 조건으로 한 부당이득 수수 사례 방지
- (제15조) 영리행위의 신고
  - 자기 경영 사업체 대상 특혜 제공 등 지방의원의 직무 공정성 훼손 소지 차단
- (제17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
  - 국내외 활동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에 금전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제한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외부강의 대가 상한선 및 경조금품 지급 기준 마련

#### (4)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및 국가이미지 제고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실천 및 부패예방정책의 조정 강화를 위해 반부패정책조정 협의회 구성 추진 검토
  - 협의회 내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G20 반부패행동계획 이행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 실무그룹 회의, 컨퍼런스 콜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반부패 행동계획의 이행 성과, 우수사례 등을 적극 홍보
    - ※ 실무그룹 회의 2011년 3회 예정(2월, 4~5월, 10월)
  
- 국제사회 홍보 강화 및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 개발도상국 대상의 반부패·청렴 정책 연수과정을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상시 운영
    - ※ 인니('06년), 태국('09년), 베트남·몽골('10년) 등 MOU 체결국 대상
  -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반부패정책 해외설명회'를 개최
    - ※ OECD 사무차장 : 한국 청렴정책을 OECD 회원국내 전파해 주기를 희망
  - 산업분야별 표준윤리강령을 보급하고,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5개) 대상 윤리경영컨설팅 실시
    - ※ G20 프랑스 정상회의 시 우리나라 윤리경영 우수사례 소개 추진 예정
  
- 반부패 국제기구·선진 외국의 반부패 동향, 평가기관의 부패 지수평가 결과 및 해외언론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청렴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



### 3. 알선·청탁의 유형 및 대처방안

#### 1) 부패발생의 원인

- 수요적 측면
  - 사회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상 공정성, 투명성이 미흡
  - 그 허점을 활용하여 청탁·알선을 하면 목적달성이 용이
  - 알선·청탁을 통해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인식과 기대
- 공급적 측면
  - 인적 네트워크, 전문성 등을 통해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유력인사
  -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공공기관 또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여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회전문 현상'
- 제도적 측면
  - 로비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현행제도 하에서 불법·음성적 청탁형태로 분출
  -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직접 청탁, 소속회사를 위한 로비 등을 하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
- 환경적 측면
  - 학연·지연·혈연·직연 등 부패친화적 연고주의·정실주의를 바탕으로 사적관계가 비공식적으로 연계되어 청탁에 유리한 환경 조성

현재의 불법·음성적 청탁은 수요, 공급, 환경적 요인이 복합하게 결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단순히 현행 제도를 부분 보완하거나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2) 알선·청탁의 유형 및 대처방안

### 가. 법령 제·개정 과정

- 주체 : 협회, 단체, 민간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영향력 행사
- 단계 : 법안발의, 상정, 심의, 보완, 수정, 의결 등 제 입법 단계에서 직·간접적인 의사표현이 이루어짐
- 대상 : 의원, 의원 보좌관, 전문위원, 정당간부, 법안소관 정부기관의 고위공무원에게 로비 등의 청탁이 이루어짐
- 수단 : 로비대상 방문, 설득, 설명회, 기자회견, 낙선운동, 후원금 및 금품제공 등 다양한 정치적 성격의 수단이 활용

### 대처방안 1 청탁사항 기록 및 공개 의무화

- 각종 청탁자 및 추천자를 포함한 개인적 의견을 문서에 게재
- 기록 및 공개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에는 청탁 및 부탁, 개인적 의견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첨부란 게시

### 대처방안 2 입법과정 기록 및 등록 의무화

- 최초 발의내용, 타부처의견, 수정과정, 법제처 심사, 전문의원 수정의견 등 제 입법과정 상의 조문의 변화과정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
- 입안정보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등에 관련 사항에 대한 기록 및 등록을 의무화하여 입법의 전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

## 나. 정책결정 과정

- 주체 : 금융·부동산 등 정책결정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특정업체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접근
- 단계 : 정책입안, 사업타당성 평가 및 검토, 정책결정 등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청탁이 이루어짐
- 대상 : 정책결정 기관의 고위공무원, 실무자, 산하연구기관, 지방의회, 및 정당간부 등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
- 수단 : 금품제공, 전·현직 공무원 영입 등 네트워크 활용 등

### 대처방안 1 의사결정과정의 공시 의무화

-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에 대한 기록 및 의사결정목록의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
- 의사결정의 내용, 참여자, 의사결정과정, 참여자의 발언내용,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 여부 등을 기록내용에 포함
- 단 공개가 제한되는 내용은 의사결정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에는 의사결정의 핵심만 소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를 통해 공개여부가 결정

### 대처방안 2 알선·청탁의 개연성이 높은 직무의 공개

- 건설, 부동산, 금융, 조세, 관세, 교정 등 알선·청탁의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사전에 지정하여 국민에게 공개
- 인사, 계약, 예산, 조직, 성과급 등 내부의 알선 청탁의 개연성이 높은 직무를 사전에 지정하여 공개함
- 직무와 담당자를 모두 공개하여 알선·청탁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전에 부패 여지를 차단



### 대처방안 3 정책실명제 실시

-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
- 모든 행정업무의 단계별, 과제별, 사례별 집행자나 처리자의 실명 제를 적극 실시하고 사후 평가하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
- 국가주요정책, 주요사건사고 등을 프로젝트 단위로 체계적 관리
  - ※ 1998년 정책실명제의 도입으로 공문서 및 보조자료 실명화 등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여 왔으나, 형식적인 운영으로 정책단계별 진행과정과 정책결정시 관련자의 책임소재 등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곤란

#### 〈 전라북도 정책실명제 우수사례〉

-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 다수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억원 이상의 다수 도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산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다수 도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 사항 등
- 정책 이력관리
  - 담당부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 실명제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과 인사이동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총괄부서에 제출함
- 사업평가
  -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당해 연도에 종결된 실명제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

### ▣ 정책집행 과정

- 주체 : 금융 대출, 건설개발, 방위사업 등 정책집행의 직접적 수혜자인 전문가 개인, 국내·외 영리기업 등이 주체가 됨
- 단계 : 기본적인 정책 방향 결정 후 업체 선정, 지원규모결정 등 세부 집행 단계에서 주로 발생

- 대상 : 중앙 · 지방의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금융 · 감독기관 등의 고위 간부, 정치인 등
- 수단 : 정 · 관 · 재계 고위층과 친분활용, 컨설팅 비용 자문료 명목의 금품제공, 선물 · 향응 제공 등의 수단을 활용

### 대처방안 1 청렴계약제

- 계약당사자인 기업과 정부와 ‘청렴계약’ 을 하고 제3자인 시민단체가 추천한 옴부즈만이 참여하여 그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니터링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찰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감시토록 함으로써 유착 관계를 미연에 방지 가능
- 특히 계약 담당자의 경우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을 의무화

### 대처방안 2 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사유평가서’ 등의 기준과 수의계약 사유평가 결과, 계약관련 정보 등을 인터넷에 공개를 의무화
-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방사물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 대처방안 3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 공직자의 퇴직 후 로비활동은 그 자체로서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줌
- 현행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취업 자체를 제한하거나 일정범위 내에서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 소속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규모 등에 상관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11년 3월 현재, 법사위 계류 중)



## ▣ 정책 결정 · 집행 등 다단계 과정

- 주체 : 협회, 단체, 개별기업, 업소 등 정책 결정 집행의 직접적 수혜자인 이익집단이 영향력 행사
- 단계 : 정책 결정 단계에서 집행까지의 연계를 예상하고, 정책 입안 · 결정, 사업자 선정까지 관련 권한행사 주체에게 전방위적으로 영향력 행사
- 대상 : 장관, 차관, 국장 등 정부고위관료, 관련 산하기관 간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부, 국회의원 · 정당간부 등 정치인 등이 대상
- 수단 : 지역행사 지원, 해외 출장 경비 지원, 워크숍 토론회 개최, 퇴직 후 취업보장 및 금품제공, 유력한 퇴직 공직자 영입 등의 수단 활용

## 대처방안 1 즉시처리 가능정보의 확대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의하여 접수하되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하도록 함
- 즉시처리가 가능하지 여부를 생산시에 지정토록 하여 정보공개 처리를 신속하게 함

## 대처방안 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 의사결정 전 과정상의 내·외부의 압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 철저히 숙지하고, 내부고발시 철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함
- 내부고발을 통해 본인 또는 타인의 알선·청탁 사례를 알렸을 경우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조직 차원의 적극적 보호장치 마련 필요

### 대처방안 3 청렴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마일리지에 따라 승진, 전보, 성과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
- 알선·청탁을 자진신고하거나 뇌물을 반납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 행위 또는 타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기타 반부패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유형에 따라 청렴 점수를 체계화하여 이를 1년 단위로 관리하도록 함
- 전보나 승진 등 인사시 청렴 마일리지 점수를 적극 반영토록 함

#### <청렴 마일리지제도 예시 :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 ■ 적용대상

- 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하 전 직원
- 타부처·지자체 파견자, 일반·전문계약직 공무원 포함
- 일용직 등 비공무원은 제외

##### ■ 마일리지 항목

###### < 가점 항목 >

- 반부패 청렴 마인드 제고 노력 분야
- 청렴교육 이수, 행동강령 문답풀이 등
- 반부패 청렴 정책기여 분야
- 아이디어 채택, 수기게재, 캠페인 참여 등
- 반부패 청렴의 적극적 실천·활동 분야
- 내부 직원의 비위·행동강령 위반 사례 신고 등

###### < 감점 항목 >

- 반부패 청렴의 실천·활동 분야
- 행동강령 위반, 복무점검·자체감사 적발, 허위신고, 민원 불친절 등
- ※ 징계의 경우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따라 감점 제외(단, 징계행위 시점의 소속 부서장·부서원은 감점)



■ 마일리지 평가·기록관리

- 개인참여 실적을 관련 부서장이 확인 → 법무감사담당관 통보 → 참여실적 확인(검증) → 개인별 누적점수 관리

■ 인센티브 부여

- 우수 직원·부서를 선정하여 연말에 포상하되,
- '11년도부터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인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 ※ 우수 직원·부서 표창, 성과평가·전보 등 인사 반영, 문화상품권 포상 등
  - ※ 타부처,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실적우수자로 선정시 소속기관에 통보

### 3) 알선·청탁에 대한 대처법

#### 가. 청탁자와의 전화통화 대응법

Q : 시간 있으세요?

A : 선약이 있습니다.(거절 가능한 경우)

Q : 시간 있으세요?

A : 사무실 앞으로 오세요, 그런데 규정상 밥값은 제가 계산해야 하므로 적당한 곳을 예약하겠습니다.

Q : 거기 있으면서 그런 힘도 없어?

A : 응, 없어. 미안해. 요즘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Q : 알고 보니 짝 막혔네

A : 그래 공무원 제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어(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음)

Q : 너무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못써

A :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어찌겠어.. 성격인 것을..

Q : 한 번만 도와주라

A :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어제 00과 00이가 좋지 않은 사건이 생겼어.. (부패로 파면된 동료 사례를 언급하며 빠져나감)

## 나. 거절이 어려운 지인의 알선·청탁 대처법

- 상관이나 친척, 동기 등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청탁이나, 부패행위이거나, 부패행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 공직자라면 누구든지 한번쯤 고민을 해 보았을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직무에 임한다면 부패행위거나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며, 잘 안될 수 있음을 사전에 분명히 한다.
- ◎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부분과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알려 준다
- ◎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워낙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 불가피하게 만나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검소한 장소를 제안하고, 장소에는 직장동료와 함께 나가며, 비용은 본인이 지불한다.
- ◎ 최근 부패행위로 문제가 된 공무원의 사례를 제시하며, 해 줄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엄격하게 처벌됨을 알려준다.
- ◎ 반드시 사무실에서 만나도록 하며, 밖에서 만났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양해를 구한다.
- ◎ 누구의 사적인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알선·청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 ◎ 평소 본인의 소신, 청렴공직자의 사례, 최근의 정부정책에 대한 강조를 통해 청탁자의 원인제공행위 자체를 차단한다.



## 다. 불가피하게 뇌물을 받았을 경우의 대처법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물을 받게 되거나 불가피하게 뇌물을 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 특히 고위공직자에게 건네지는 뇌물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후 대처법을 알아 두어야 할 것임

- ◎ 먼저 정중하게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을 밝히되, 만약 자신도 모르게 뇌물을 보유하게 될 경우 뇌물제공자의 신원과 뇌물 제공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한다.
- ◎ 뇌물제공자가 당신과 같이 있는 경우, 당신과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뇌물제공자가 뇌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하고 당신의 동료들을 목격자로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 뇌물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을 즉각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공식적 문서로 남겨둔다.
- ◎ 부패고발의 절차와 방법, 부패신고로 인한 보복발생시 자신의 보호절차에 대해 평소 숙지해 둔다.
- ◎ 알선·청탁을 받거나 타인의 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하여 상담 일지를 남겨둔다.
- ◎ 가족 등이 모르고 뇌물 등을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행동강령 책임관 등을 통한 공식적 절차를 통해 공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라. 사생활에서의 자기관리

- ◎ 가계를 월급의 범위 안에서 꾸려야 한다
  - 자신의 수입을 초과하는 과도한 지출은 부패유발의 가장 큰 요인
- ◎ 가족들과 화목한 생활을 해야 한다.
  - 불륜관계나 바람을 피우는 것은 부패의 커다란 요인
- ◎ 도박이나 투기, 과도한 주식투자 등을 철저히 삼가야 한다.
  - 시간과 건강, 돈을 낭비하게 되면 정신이 피폐해지고 가정생활이 망가져 죄의식이 무너지고 뇌물제공자의 유혹에 흔들리게 됨
- ◎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견지하고 현재 직업의 보람과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가족들과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 가족들의 적극적인 인식공유와 지원, 협력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첩경
- ◎ 연말정산, 재산등록 및 공개 등 공직자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관리한다.
  - 소득이 있는 가족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작은 이익에 연연해서는 안됨
  - 재산등록 업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본인과 등록의무 대상가족의 불법적 재산 취득과 이전 등을 본인 스스로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
- ◎ 공직자 행동강령, 윤리수칙 등을 철저히 수칙한다.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 식사 등 향응 제공 등에 대처하기 위해 평소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해 철저히 숙지해야 함
  - 외부강의 신고, 인사시 난선물과 같이 간과하기 쉬운 실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강령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함

# IV

## 향후계획

# IV | 향후계획

## 1.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 공공분야의 부패는 우리사회 전반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최고 관리자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함께, 공공기관 전 구성원들이 확신을 갖고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에 동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 : 2011년 2월 17일 '공정사회 추진회의'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5가지 추진방향

-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 2. 향후계획

- 권익위는 올해를 '알선·청탁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방위적 알선 청탁 근절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
-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및 교육 의무화, 청렴도 평가 실시
- ※ 공관장 등 해외근무 공직자에 대한 의무화 방안 마련
- 부패를 유발하는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제도 강화
- 고위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례에 대한 이행 점검 강화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마련 등

##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기준 ●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관하여

- 평가지표는 모두 23개 항목(설문항목 19, 계량항목 4, 기관별로 가감 가능)
- 설문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점수화(계량평가)하여 감점 반영

$$\begin{array}{c}
 \text{고위공직자} \\
 \text{청렴도}
 \end{array}
 =
 \begin{array}{c}
 \text{내부설문평가} \\
 (75\%)
 \end{array}
 +
 \begin{array}{c}
 \text{외부설문평가} \\
 (25\%)
 \end{array}
 -
 \begin{array}{c}
 \text{계량지표평가} \\
 (\text{감점반영})
 \end{array}
 ,
 \begin{array}{c}
 \text{자기평가} \\
 (\text{참고지표})
 \end{array}$$

※ 설문지표(19개), 자가진단체크리스트(30개)에 대해 자기평가(점수 미반영)

- 평가 범위는 기관 특성에 따라 예시를 참고, 자율적으로 결정  
(평가대상 확대·축소 가능)  
(예시) 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실·국장급 이상), 공직유관단체(상근임원 및 본부장급 이상)  
※ 선출직 및 인사청문회·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는 기관장, 정무직 등은 제외
- 계량지표의 점수화
  - 법규 위반 등 계량지표를 수집, 위반 유형 및 위반 빈도(건수)별로 감점 조치  
※ 계량지표(4개) : 세금체납여부, 교통법규위반실적, 징계처분실적, 재산신고심사결과
- 자기평가 : 설문항목 19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0개에 대해 자기평가를 실시하여 참고 활용(청렴도 점수 미반영, 본인에게만 제공)

평가지표(가중치) 및 평가방법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평가방법			
					설문조사		객관적자료	자기평가
					내부	외부		
실문평가	직무 청렴성 (70.0)	공정한 직무수행 (23.5)	1-1. 내부직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7.5)	●			●	
			1-2. 공정성을 저해하는 대외적인 알선·청탁 및 특혜제공(6.5)	●	●		●	
			1-3.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2)	●			●	
			1-4.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3)	●			●	
		부당이득 수수금지 (33.2)	1-5.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8.5)	●	●		●	
			1-6.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음·편의 수수(7.0)	●	●		●	
			1-7.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0)	●			●	
			1-8.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5.5)	●			●	
			1-9.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4.2)	●			●	
			1-10.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0)	●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3.3)	1-11.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3.5)	●	●		●		
		1-12. 과도한 외부강의(3.3)	●			●		
		1-13.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0)	●			●		
		1-14.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			●		
사회적 책 임 및 솔 선수범 (30.0)	청렴실천 및 노력 (16.3)	2-1. 경조사 통지, 과도한 경조금품 수수(5.3)	●	●		●		
		2-2.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6.5)	●	●		●		
		2-3. 청렴수준 향상 노력 및 솔선수범(4.5)	●	●		●		
	건전한 사생활 (13.7)	2-4.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7.5)	●	●		●		
		2-5. 고급 유흥업소출입 등 호화로운 생활(6.2)	●	●		●		
계량평가	행동강령위반 및 준법성 (100.0)	3-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미납			●			
		3-2. 도로교통법 위반(면허정지 기간중 운전, 음주운전 등)			●			
		3-3. 복무,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			
		3-4.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불성실 신고			●			



## ●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평가지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평가지표
1. 나는 부동산 취득 등 투자목적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다. (위장전입)
2. 내 자신이나 배우자가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으로 비난 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불건전한 영리활동)
3. 나는 성희롱, 이성문제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성도덕, 이성문제)
4. 나는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채 국내로 반입한 경험이 있다. (면세품 구입한도 초과)
5. 나는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각종 법규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험이 있다. (공무원 신분 은폐)
6. 나는 사인이나 금융기관과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자주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험이 있다.(채무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
7. 내 자신 또는 배우자가 투기 목적의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농지 등)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
8. 나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부동산·예금을 가족, 친척,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있다. (세금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9. 나는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거나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춘 사실이 있다.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거래의 부적절성)
10. 나는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득·등록세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다.(부동산 계약서 허위작성)
11.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사업소득·임대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적이 있다. (각종세금 불성실 납부)
12. 나는 공직자재산신고시 현금, 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을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 (재산 불성실 신고)
13. 나는 연말정산시 종교시설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소득이 있는 가족을 허위로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신고를 한 경험이 있다.(연말정산 허위신고)
14. 나는 소득이 있는 가족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다.(사회보장보험료 불성실 납부)

15. 나는 가족수당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각종 수당 ·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 혹은 수령한 경험이 있다.(각종 수당 · 보조금의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
16. 내 자신이나 배우자가 국적 취득을 위한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다.(원정출산)
17.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 중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다.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국적포기)
18.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수행 중 교육 · 연수를 받거나,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경력이 있다.(병역의무 불성실 이행)
19.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의 軍 복무와 관련하여(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포함) 신체검사, 보직 부여, 부대 및 근무지 배정, 외출 · 외박 · 휴가 등을 위해 지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다.(군 복무 관련 청탁)
20.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체검사 혹은 군 입대를 연기할 목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신체검사 · 군 입대의 부당한 연기)
21. 나는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품위손상행위)
22. 나는 업무관련자와 술자리, 골프, 해외여행 등을 함께 한 사실이 있다.(업무관련자외의 부적절한 접촉)
23. 나는 가족 혹은 지인의 취업을 위해 업무유관기관이나 업무관련자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다. (가족 혹은 지인을 위한 취업 청탁)
24. 나는 내가 수행하는 직무가 내 자신,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임에도 직무의 회피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 ·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의하지 않고 직접 처리한 사실이 있다.(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불이행)
25. 나는 과거 내가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하였던 경험이 있다.(비밀유지의무 위반)
26. 나는 연가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에 다니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다. (부당한 학위취득)
27. 나는 학위 또는 연구 논문을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토록하거나,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 작성하였음에도 공동저자로 표시하지 않은 적이 있다.(논문대필 등)
28. 나는 논문 혹은 연구실적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여 ‘자기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될 만한 사례가 있다.(연구실적 부풀리기)
29. 나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중에는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다.(저서, 논문 등의 표절)
30. 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당적을 보유한 경험이 있다.(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 알선·청탁 사례 ●

### 1. 행동강령 위반사례

#### 사례 1 지방의회 의원의 특정직원 채용 청탁 (제8조 위반)

- 모 기초자치단체 A 총무과장은 군의회 B의원으로부터 친척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 줄 것과 만일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심의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 전화를 받은
- A과장은 고민을 거듭하다 이를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인사계장과 협의하고 면접 당일 사전에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줄 것을 부탁하여 B군 의원의 친척이 합격하도록 도와줌

❖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함

#### 사례 2 승진인사 청탁 (제9조 위반)

- 기초자치단체 7급 공무원인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B씨를 찾아가 금번 6급 승진 심사 시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 B국회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을 시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 A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청탁케 함

❖ 공무원이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국회의원 등 타인을 통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 단, 공무원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희망부서 등 인사고충 및 상담을 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

### 사례 3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작품 거론 (제11조 위반)

- 모 공직유관단체 임원 A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예산 지원 사업의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업체의 출품작을 거론함
- ❖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알선·청탁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심사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출품한 작품을 거론한 행위는 공정한 심사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상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 사례 4 부당한 대학교수 임용 인사청탁 (제 9조 위반)

- 모 중앙부처 A 국장은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던 모 언론사 대표 B로부터 자신의 아내 C가甲대학 교수에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자
- 인사 및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甲대학 학장에게 C가 신입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인사청탁을 함
- ❖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국장이 청탁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에 위반되며, 청탁한 내용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아도 위반됨

### 사례 5 부당한 납품업자 소개행위 (제 11조 위반)

- 모 기초자치단체 A부군수는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인조잔디 납품업자로부터 군 공설운동장에 자기 회사의 인조잔디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자
- 군청 담당과장을 부군수실로 호출하여, 위 잔디납품업자를 담당과장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절히 이용하여 도와주라고 말함

- 비록 부군수가 위 업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를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소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위반임

### 사례 6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제 13조 위반)

- A 부장판사는 2003년 모 지법에 근무하던 시절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동업자 C씨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음

### 사례 7 ‘탈북자 사업 넘겨달라’ 청탁 (제 13조 위반)

- 탈북자 지원사업의 민간이양을 추진해 온 A씨는 2006년 9월 단양의 모 불교종단으로부터 종단이 사업을 떠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음

### 사례 8 부당한 납품업자 소개행위 (제 13조 위반)

- 00기관 A청장은 00그룹 B회장으로부터 “00건설 인수를 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19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전달받음
- 이후 B 회장이 00건설 인수에 실패하자 A청장은 이를 돌려줌



## 2.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알선·청탁사례

### (1) 법령 제·개정 과정

#### 사례 1 00사업 시행을 위한 입법 ('02.4월, 삼성경제연구원)

- 월드컵 경기장 건설재원 마련을 위한 00법 개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
- 국회(00위원회) 의원입법을 추진한 국회의원 및 관련부서 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청탁 및 로비
- 의원접촉 및 설명, 후원금 제공 등의 로비수단 활용

#### 사례 2 00조합 개혁을 위한 입법 ('99.3월, 삼성경제연구원)

- 협동조합 통합 등을 골자로 한 00조합 개혁입법과정에서 관련단체가 소관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임
- 의원방문 및 설득, 낙선운동 등 직접적 압박과 함께 지역구민 동원 등 간접적 형태의 로비도 병행

### (2) 정책 결정 과정

#### 사례 1 00은행 매각 비리 ('06년 11월, 주요언론보도)

- 외자유치를 통한 부실은행 정상화 목적의 정책결정과정에서 00은행의 자산은 저평가 하고 부실규모는 부풀려 정상가격보다 최대 8,562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한 의혹
- 외국계 사모펀드기업(000)이 정부관계부처 전·현직 고위공무원에게 관련내용 청탁 및 금품제공
- 알선 청탁을 담당한 변호사(제3자)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
  - ※ 전직 고위관료들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고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비난 가중



### 사례 2 00 재개발 비리 의혹 ('05.5월, 전남일보 등 주요 언론보도)

- 00 주변 부동산 개발정책 입안 및 결정과정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금품제공 및 청탁 사례
- 특정 부동산개발업체가 지방자치단체 고위간부(부시장 등), 정책입안을 담당한 산하기관 연구원, 지방의회 사무처장, 정당 지구당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금품제공
  - ※ 지방의회 사무처장이 업체의 고문을 맡아 담당공무원에 대한 알선 중개

## (3) 정책 집행 과정

### 사례 1 000 로비 사건 ('06년 3월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 금융계 '마당발 인맥'을 활용하여 은행대출 및 사모펀드 투자알선, 채무감면을 청탁
- 정·재계 고위관료, 금융기관 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식적인 컨설팅 계약 체결 후 대출 커미션을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

### 사례 2 00개발 비리 사건 ('05년 11월 조선일보 등 언론보도)

- 정부의 개발규제 정책결정(개발승인불가)을 반복하여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청탁
- 건설회사 등의 이익집단이 관계부처와 지자체 고위공무원 대상 로비
- 권력기관에 인맥이 있는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주무부처 고위관료와 접촉,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자문료 명목의 금품 제공

### 사례 3 '000' 사건 ('98년 9월 주요 언론보도)

-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정보수집능력 향상을 위한 통신감청용·영상정보 수집용 경찰기 구매사업자 결정 관련 알선·청탁 사례
- 미국의 000사 등 외국방산기업이 공무원, 정치인을 대상으로 로비
- 미국 000사의 로비스트인 000은 금품·향응 제공, 00장관·00위원장·전 000장관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형태로 로비

#### (4) 정책 결정 · 집행 등 다단계과정

##### 사례 사행성 게임물 관련 비리 ('06년 8월 '000' 사태)

- 경품용 상품권 제도 도입(정책결정),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및 사행성 게임단속(정책집행) 과정에서 컴퓨터 게임 관련 특정 이익단체가 국회, 정부부처, 관련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
  - ※ 성인용 게임산업정책 실패에 따른 매몰비용 6조6천억원과 사회적 기회비용 8조3천억원 손실(김종법 국민대 교수 '정책실패와 매몰비용' )
- 지역 게임산업 관련 행사지원, 의원 및 보좌관 해외산업 박람회 참석지원, 관계부처 전 고위공직자 관련 협회 고문직 보장, 게임산업에 유리한 입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모 의원에게 전달
- 00 전 000장관이 상품권 허용 로비주체인 오락관련 협회 고문직을 맡았다가 000 사태가 확산되자 사퇴





## ● 알선·청탁 금지에 관한 법령 ●

### ● 형법 제129조~제132조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11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공직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말함

- 정치자금법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고위 공직자 청렴서약 의무화 추진 방안 ●

### ▣ 추진배경

-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적 기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마음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
  - ※ 그동안 인사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스폰서 사건 등으로 고위직 공직 후보자들이 수차례 낙마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윤리의식 실감
- 위원회는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 임명, 전보 등 인사시 청렴서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시 보고('11. 2. 8)
  - ※ 국민들은 부패가 가장 심각한 계층으로 선출직(47.6%), 고위공무원(33.9%)이라고 인식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10. 11월)
- 이에 반부패 청렴서약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기관에 시달,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할 필요

### ▣ 적용 대상(고위 공직자)

- 적용 대상은 기관별 업무 특성, 직급 구조 등을 고려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결정 (정무직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감사 제외)
  - ※ 예시) 중앙행정기관(고공단), 광역지자체(3급 이상),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상근임원 및 부서장) 등
-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의 직급 체계는 상이
- 각급기관에서는 고위직 공직자 외에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서약 실시 여부는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

## ▣ 청렴 서약서 작성 방법

- 위원회는 청렴 서약서 표준안을 작성, 각급기관에 시달(1단계)
  - 반부패 청렴과 관련된 사항으로 고위 공직자가 공·사 생활에서 반드시 준수하고 행동해야 할 사항으로 선정(5~6개 항목)
    - ※ 청렴 서약서 표준안 : 붙임 참조
- 각급기관은 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청렴 서약서 작성(2단계)
  - 단, 고위 공직자로서 평소 청렴한 생활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이를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 필히 포함

## ▣ 청렴서약 시기

-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시기부터 사후 발생하는 각종 인사시 의무적으로 청렴서약 실시
  - 고위직 임용시, 타기관 전입시, 승진시, 보직 변경시 등

## ▣ 청렴 서약서 관리

- 청렴 서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 서약서 2부에 서명하여 1부는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본인이 보관
- 감사부서는 소속기관의 청렴 서약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

## ▣ 제도적 기반 구축(검토 필요사항)

- 위원회는 고위공직자 청렴 서약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보칙에 공직자 청렴서약을 신설
-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을 받는 기관은 위원회가 마련하는 행동강령을 토대로 자체 행동강령에 청렴서약 의무화를 반영
  -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을 받지 않는 공직유관단체는 자체 행동강령에 신설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협조 요청

## ▣ 향후 추진계획

- 위원회 표준안 마련, 각급 기관에 시달 : '11. 2월중
- 각급기관별 청렴서약서 마련, 시행 : 서약서 마련 즉시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검토 : '11. 3월~
  - ※ 공무원 행동강령 보칙에 청렴 서약 의무화를 신설하는 방안
- 각급기관 이행상황 확인 점검 : 부패방지 추진시책 이행상황 점검시(결과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반부패 청렴 서약서

나는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받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여, 조직 구성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 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조성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사 생활을 솔선수범 하겠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11년 ○월 ○일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서명)



##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지침 ●

### ▣ 추진 배경

-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윤리적 기대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
  - ※ 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시 보고 ('11. 2. 8.)
- 이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고,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반부패 청렴 윤리과정을 도입 방안 마련 운영
  - ※ 고위공직자는 국정목표 구현자, 품격 높은 관리자, 성과책임 등 임무 수행

### ▣ 근거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의 방법으로 소속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함

### ▣ 추진 지침

#### 【 고위 공직자 대상 】

- 교육대상 :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전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직자가 고위공직자로 승진하는 때부터 1년 이내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권고
  - 고위직의 범위는 <예시>를 참조하여, 각급 기관의 직위수준 및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청렴서약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보다 확대하여 운영

〈예시〉 기관유형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범위

기관 유형	고위공직자 범위
중앙행정기관	· 심의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과장급 직위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 부서장, 팀장급 이상 간부

- **교육분야** : 청렴, 윤리,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의 자세  
(6대 덕목 : 공정, 책임, 절제, 약속, 정직, 배려) 등을 주제로 한 내용  
※ 청렴사적지 방문, 청렴관련 강연, 저서 발간 및 기고 실적 인정
- **교육방법** :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 참석 등 집합교육 과정 및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수시보수교육 필요)
- **교육시간** : 고위공직자 1인당 연 5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를 권장  
※ 권익위가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부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시간’ 항목에서 1인당 5시간 이상 이수시 만점부여

〈예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교육분야)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 점
청렴교육 추진실적	간부 공직자 청렴교육 정도	간부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1인당 평균) - 5시간 이상 : 50점    - 3~5 시간 : 38점 - 1~3 시간 : 26점    - 0~1 시간 : 14점 - 실적 없음 : 0점	50

- 사후관리 : 각급기관에서 자율적·양심적으로 운영하되, 평가 실시하는 방안 검토 추진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시책평가에 반영

## 【 교육훈련기관 대상 】

- 자체교육훈련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서는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를 위한 청렴교육 과정 마련
  - 각급 교육훈련 기관에 협조요청 및 협의(3월~반영시)
    - ※ <사례> 권익위 청렴교육전문가 과정(과장급 이상) 4회 운영, 제주도교육청 :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역량강화 직무연수' 시 청렴내용 반영 및 평가 실시
  - 권익위 청렴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컨텐츠, 강사풀 등 지원
-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중인 각급 훈련기관에서는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반영 (분임토의시 청렴관련 과제 선정 등)
  - '10년 행안부 협의결과 '2011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관련 내용 반영 및 시달
  - 권익위는 각급훈련기관 '11년도 훈련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및 업무 협의 추진

## ▣ 협조요청 사항

- 각 기관별로 공직자가 고위공직자로 승진하는 때부터 1년 이내 청렴교육 이수토록 독려 (전 공공기관)
-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기관에서는 교육과정에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 대상 청렴교육 과정 마련·운영



## ●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않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 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참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제26조(보상금)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 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 제외)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식품위생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폐기물관리법」
7. 「혈액관리법」
8. 「의료법」
9. 「소비자기본법」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 공무원 행동강령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부칙 <제22471호, 2010.11.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 익선·청탁 근절방안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전 화 : (02)360-6552 FAX : (02)360-3548

디자인·인쇄 : 초이스디자인(TEL. 02-2275-2633)